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료 금액의 합 산 액 은 100 만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피 보 험 자 1명당 5 만원. 다 만, 과태 료 금액의 합 산 액 은 100 만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료 금액의 합 산 액 은 100 만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피 보 험 자 1명당 8 만원. 다 만, 과태 료 금액의 합 산 액 은 200 만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료 금액의 합 산 액 은 100 만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피 보 험 자 1명당 10 만원. 다 만, 과태 료 금액의 합 산 액 은 300 만 원 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 우	법 제118 조제1항제2 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다. 법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 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않 은 경우	법 제118 조제1항제3 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라. 법 제87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 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 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 조제3항	50만원	50만원	50만원
마.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 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않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 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8 조제1항제4 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바.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 구에 불응하여 증명서를 내주 지 않은 경우	법 제118 조제1항제5 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사.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요 구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법 제118 조제2항제1	50만원	50만원	50만원

으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	호			
아.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 제1항 제6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자.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18조 제2항 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